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4차 국회운영위원회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인사청문 대상에 방송통신심의회 위원장 추가〉

■ 김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3841호, 제2203842호)

2024. 10.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목 차

I . 제안경위·제안이유·주요내용	1
1.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
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3
II . 검토의견	5
1. 개정안의 주요내용	5
2. 국회 인사청문제도	7
3. 검토의견	9
※ 참고자료	13

I. 제안경위·제안이유·주요내용

1.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가.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 현 · 박민규 · 정진욱 · 이정현 · 송재봉 · 주철현
최민희 · 황정아 · 김 윤 · 문금주 · 이병진 · 이광희
김영환 · 강준현 · 민형배 · 박희승 의원(16인)

2) 제 안 일 : 2024. 9. 10.

3) 회 부 일 : 2024. 9. 11.

※ 의안번호 : 3841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 임명동의나 선출을 요하는 공직자 등의 자질과 능력 등을 사전에 심사하기 위하여, 인사청문제도를 두고 있음.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류희림 위원장은 민원사주와 편향된 정치심의로 언론의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가운데 임기종료 다음날 기습적으로 문을 걸어 잠근 채 회의를 열어 날치기 연임까지 강행함.

방심위의 방송내용 심의·규제 권한은 자칫 언론·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해지면서, 장관급 인사

로 분류되는 방심위원장의 자질과 능력에 대한 검증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커짐.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도 인사청문회의 대상이 되어 국민앞에 역사관, 도덕성, 직무수행 능력이 검증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들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끼치는 공직자로서 직무수행 능력이 검증될 수 있도록 「인사청문회법」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안 제6조제3항).

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현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843호) 및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84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가. 제안경위

- 1) 발 의 자 : 김 현 · 박민규 · 박홍배 · 정진욱 · 이정현 · 송재봉
주철현 · 최민희 · 황정아 · 김 윤 · 문금주 · 김영환
이병진 · 이광희 · 강준현 · 박희승 의원(16인)
 - 2) 제 안 일 : 2024. 9. 10.
 - 3) 회 부 일 : 2024. 9. 11.
- ※ 의안번호 : 3842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 임명동의나 선출을 요하는 공직자 등의 자질과 능력 등을 사전에 심사하기 위하여, 인사청문제도를 두고 있음.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류희림 위원장은 민원사주와 편향된 정치심으로 언론의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가운데 임기종료 다음날 기습적으로 문을 걸어 잠근 채 회의를 열어 날치기 연임까지 강행함.

방심위의 방송내용 심의·규제 권한은 자칫 언론·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해지면서, 장관급 인사로 분류되는 방심위원장의 자질과 능력에 대한 검증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커짐.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인사청문 대상이 되어 국민들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끼치는 공직자로서 역사관, 도덕성, 직무수행 능력이 검증될 수 있도록 「국회법」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안 제65조의2제2항제1호).

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현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843호)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84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II.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하여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을 포함시킴으로써 임용 전에 그 자질 및 직무적합성을 검증하려는 것임.

[표-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65조의2(인사청문회) ① (생략) ② 상임위원회는 다른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각 인사청문회를 연다. 1.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국무위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국가정보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합동참모의장, 한국은행 총재, 특별감찰관 또는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후보자	제65조의2(인사청문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1. ----- ----- ----- ----- ----- ----- -----, <u>방송통신심의위원회</u> <u>위원장 또는</u>-----

2. 국회 인사청문제도

인사청문회는 국회의 임명 동의나 선출을 요하는 공직후보자를 출석하게 하여 당사자로부터 진술·설명을 청취하고 필요한 경우 증인 등으로부터 증언·진술의 청취, 기타 증거를 채택하는 제도를 뜻하며, 공직후보자의 업무수행능력, 정치적 리더로서의 도덕적 권위, 국정현안에 대한 정책적 조망 등을 적극적으로 검증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대통령에게 고위공직에 대한 인사권이 편중됨에 따라 인사가 개인의 자질과 능력보다는 학연·지연에 입각한 정실인사 또는 편중인사 등 한국적 특수성에서 기인한 문제가 나타났음.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제14대국회부터 국회가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대통령의 자의적인 인사권을 통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었고, 그 방안으로 인사청문회가 논의되었음.

제16대국회 2000년 6월 19일 본회의에서 「인사청문회법」 제정을 의결함에 따라 국회에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그 후 인사청문 대상자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음.

현재 「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인사청문 대상은 총 66인임. 그 중 국회 동의를 받거나 국회에서 선출하는 직위(23인)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밖에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직위(44인)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열고 있음.

[표-2] 인사청문 실시 대상 현황

실시주체	대상 공직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23인)	국회 동의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13인)	국회 선출 헌법재판소재판관 3인 중앙선거관리위원 3인
소관 상임위원회 (44인)	대통령 임명 국무위원(19인), 헌법재판소재판관 3인, 중 앙선거관리위원 3인, 방송통신위원장, 국가 정보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국가인권위원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합동참모의장, 한국은행 총재, 특별감찰관, 한국방송공사 사장	대법원장 지명 헌법재판소재판관 3인 중앙선거관리위원 3인

3. 검토의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의 공정성·공공성 및 제재조치에 관한 심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정보 유통에 관한 심의 등을 담당하는 민간 독립기구로,¹⁾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등에 대한 제·개정 권한²⁾과 「방송법」상 제재조치(프로그램 또는 방송광고의 정정·수정·중지, 관계자에 대한 징계, 경고, 주의)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제재조치(불법정보 유통에 대한 취급 거부·정지 또는 제한)를 1차적으로 결정하는 권한³⁾을 지니고 있음.

[표-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무 및 구성

구 분	주 요 내 용
설치 목적	◦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 보장,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 창달 및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
직무	◦ 방송의 공공성·공정성 심의 ◦ 방송의 공공성·공정성 및 협찬고지 규칙 위반에 관한 제재조치 심의 ◦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정보 유통금지에 관한 심의 ◦ 전기통신회선을 이용하여 유통되는 정보의 건전화에 관한 사항 심의 ◦ 명예훼손 분쟁조정,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청구심사 ◦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등
심의위원 구성	◦ 대통령이 위촉하는 총 9인으로 구성 - 3인은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 - 3인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
심의위원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교육공무원, 대법관, 판사 제외), 당원,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3년 이내에 종사한 사람,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선거로 취임한 공직에서 퇴직한 날 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 신분 상실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위원장 선출	◦ 심의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상임위원 3인은 호선

자료: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관련된 조문을 정리하여 작성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관 성격에 대한 방송법 해설서(김정태, 2019) 중]

민간 독립기구라는 것은 민간인 신분 직원으로 구성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정부기관과의 차별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것은 심의 행위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한 제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직원 신분이 민간인이라고 해서 심의기능이 민간 분야의 업무라는 뜻은 아니며, 이는 법원의 판례에서 잘 나타난다. 관련된 법원

개정안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처분 권한이 없는 민간 독립기구의 장이기는 하나 그 역할과 권한이 막중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직위에 대해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검증하고, 심의 업무의 공정성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국회법」 제65조의2제2항4)은 다른 법률에 따라 인사청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근거는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외에 개별법에도 그 근거규정을 두어야 함. 따라서 동 개정안에 대한 심사 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 중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843호)」의 심사 상황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⁵⁾

의 관례에 비추어 보면, 심의기능과 이에 대한 제재 등은 공직 직무(‘처분’으로 본다)이며, 이를 담당하는 심의위원회도 ‘국가기관’이다(관련 관례 : 대법원 2001.12.24. 선고 2001다54038)

- 2) 「방송법」 제33조(심의규정) 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審議規程”이라 한다)을 제정·공표하여야 한다.
- 3)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제재조치 등) ① 심의위원회는 방송 또는 정보통신의 내용이 제24조의 심의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제재조치 등을 정할 수 있다.
 1. 「방송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권고 또는 의견제시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에 대한 취급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
 - ③ 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제재조치를 정한 때에는 위원회에 지체 없이 제재조치의 처분을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심의위원회로부터 제재조치의 처분을 요청받은 때에는 「방송법」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 등에 대하여 그 제재조치의 처분을 명령하여야 한다.
- 4) 「국회법」 제65조의2(인사청문회) ② 상임위원회는 다른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각 인사청문회를 연다.
- 5) 체계자구의 측면에서 개정안 제65조의2제2항제1호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규정한 반면, 과방위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호선된 심의위원장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

둘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민간 독립기구에 불과하여 동 위원회의 1차적인 제재조치 결정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최종적으로 법적 처분을 행하고 있고⁶⁾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해서는 현재도 임명 시 인사청문을 거치고 있다는 점,⁷⁾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과 같이 호선하는 직위에 대해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한 사례는 없다는 점⁹⁾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을 국회 인사청문의 대상으로 추가할지 여부는 관련 법안의 심사 경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적 성격 및 위원장 자격, 국정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통령이 “위촉”하도록 규율하여 법문언이 상이하므로 조정이 필요한.

- 7)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18조(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④ 심의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상임위원 3인은 호선하고, 보수 등 처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호선된 심의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위촉한다. <신 설>

- 6) 제재조치에 대한 처분 권한을 정부기구인 방통위가 갖는 것은 법률에 따른 제재조치가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민간기구가 갖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법 논리에 따른 것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위원회는 소관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20.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른 제재 등에 관한 사항

제25조(제재조치 등) ⑤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심의위원회로부터 제재조치의 처분을 요청받은 때에는 「방송법」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 등에 대하여 그 제재조치의 처분을 명령하여야 한다.

- 7)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임명 등) ① 위원장 및 위원은 방송 및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8) 김여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성 관련 법률 개정 논의」, 『이슈와 논점』 제1879호, 국회입법조사처, 2021.
9) 「국회법」 제65조의2제2항에 따라 인사청문을 실시하고 있는 공직은 대통령(대통령당선인) 혹은 대법원장이 임명·지명하거나 국무총리·이사회 등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위로, 현재 호선하는 직위에 대해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는 경우는 없음.

「국회법」 제65조의2(인사청문회) ② 상임위원회는 다른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각 인사청문회를 연다.

1.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국무위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국가정보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국제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합동참모의장, 한국은행 총재, 특별감찰관 또는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후보자
2. 대통령당선인이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지명하는 국무위원 후보자
3.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후보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현행법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민간독립 심의기구로 두어 방송에 대한 국가 간섭을 최소화하여 방송의 공정성·중립성을 확보하고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공직자가 아닌 민간인 신분이라는 점에서 청문 대상에 추가하는 것이 부적절하며, 국회가 대통령의 권한을 과도하게 제약할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015

도입 시기	법적근거	대 상 자
제15대국회	「국회법」 개정(2000. 2. 16.) 「인사청문회법」 제정(2000. 6. 23.)	-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임명동의안) -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국회선출)
제16대국회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개정(2003. 2. 4.)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정(2003. 2. 4.) ※ 「국회법」 부칙에서 개별 법률 개정	- 국무총리(대통령당선인) - 국가정보원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제17대국회	「국회법」 개정(2005. 7. 28.) 「인사청문회법」 개정(2005. 7. 29.) ※ 「국회법」 부칙에서 개별 법률 개정 「헌법재판소법」 개정(2005. 7. 29.)	- 국무위원(대통령)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대통령임명, 대법원장지명)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개정(2007. 12. 14.) ※ 「국회법」 부칙에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개정(2005. 7. 28.)	- 국무위원(대통령당선인)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정(2006. 12. 28.) 「국회법」 개정(2006. 12. 30.) 「인사청문회법」 개정(2007. 12. 14.)	- 합동참모의장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2008. 2. 29.)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에서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개정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제18대국회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개정(2012. 3. 2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한국은행법」 개정(2012. 3. 21.)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한국은행 총재
제19대국회	「특별감찰관법」 제정(2014. 3. 18.) ※ 「특별감찰관법」 부칙에서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개정	- 특별감찰관
	「방송법」 개정(2014. 5. 28.)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 부칙에서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개정	- 한국방송공사 사장
제21대국회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개정(2020. 8. 1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2020. 1. 14.)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정부조직법」 개정(2023. 3. 4.) ※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	- 국무위원(국가보훈부장관)